긴급입찰 사유서

□ 공사명 : (가칭)배곧2고 신축 소방공사

□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 긴급입찰 사유

- 우리교육지원청 계약요청 건인 「(가칭)배곧2고 신축 소방공사」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2028년 1월까지 준공 후 개교 준비(60일이상)하여 2028년 3월 개교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 배곧2고 학교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절대공기 510일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입찰 사유를 제출하오니 빠른 시기에 계약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교예정 : 2028. 3. 1.

 · 공사기간 : 510일

 · 계약 및 착공예정일 : 2026년 9월

 · 긴급입찰 사유

 : 적기 개교 준비를 위하여 절대공기 확보 필요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3호 및 제5호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채 열 희 (인)